
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66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11. 28. 
제출자 : 달성군수 

1. 제안이유

비용추계의 방법 및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하며, 관련 서식을 보완·신설하여 입법절차의 통일성과 행정 운용의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 정비 및 비용추계 방법 명확화(안 제2조제4호, 안 제9조제1항, 안 제10조제3항·제4항·제6항 등)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근거 신설(안 제9조제5항, 안 제12조제2항)
- 다. 별지 서식의 보완 및 신설(안 별지 1 개정, 안 별지 2 신설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대비표 : 별도 첨부
 - (2) 입법예고(2025. 10. 30. ~ 11. 19.) 결과 : 의견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발의한”을 “제출한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발의”를 “제출”로 하고, “별지 서식에 따라”를 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상계하지”를 “상계(相計)하지”로, “상계하여”를 “공제한 나머지 비용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”를 “재정 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0조제6항 중 “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”을 “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”으로, “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”를 “이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비용추계서를”을 “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”로 한다.

별지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,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○○○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가.

나.

2. 재정수반요인

3. 관련조문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나. 추계의 결과

다. 재원조달방안

5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6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작 성 자

소속 및 직위

성명(연락처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년)	2차년도 (년)	3차년도 (년)	4차년도 (년)	5차년도 (년)	계
세 입						
△△△△ △△△△ △△△△						
세 출						
△△△△ △△△△ △△△△						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지방세					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						
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만자, 예비비 등)						

작성요령

I. 비용추계

1. 재정수반요인·관련조문 :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.
2. 추계의 전제 :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 기준, 비용추계기간,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.
3. 추계의 결과 :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 예상 비용을 재정수반요인별, 재정부담주체별,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.
4. 재원조달 방안 : 지방세수입·세외수입 등 자체수입, 국고보조금·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, 지방채 및 기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5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: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,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.
6. 작성자 :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소속·직위·성명·연락처를 기재하되, 전문기관이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.

II. 연도별 비용추계표

- 연도별 및 재원별로 추계 결과와 재원조달방안에 따른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.

○○○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(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3. 미첨부 사유

(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)

작 성 자

소속 및 직위

성명(연락처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,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.

제12조(작성부서 및 제출시기) ① (생략)

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세입 및 세출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·규칙심의회(이하 “조례·규칙 심의회”라 한다) 상정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.

안전부의 해당연도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-----, 이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 -----.

제12조(작성부서 및 제출시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-----.

관 계 법 령

□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·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에서 각각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또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·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발의·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

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④ 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제5조(비용추계의 방법)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.

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.

③ 관계 법규,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제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.

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.

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,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.

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,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) ① 의원등의 의안에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용(이하 “비용”이라 한다)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 및 의안에의 첨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4. 긴급하게 의안의 심의·의결이 필요하다는 소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(위원회의 의안에 한정한다)

제5조(비용추계의 방법 등)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근거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.

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(相計)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, 관계법령·조례·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.

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재정 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, 연도별 구분 계산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.

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, 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일정범위로 나타내거나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 등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.

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을 적용하고, 이 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작성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.